

(사업방법서 별지)

1. 보험종목의 명칭

사후정리 특약

2. 지급보험금액의 한도

주계약 사망보험금액(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포함)의 50% 이내에서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별로 다른 보험계약을 더하여 1인당 최고 3,000만원까지로 한다.

다만,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액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액은 제외한다.

3. 기타

가. 부가대상상품

(1) 이 특약은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 다만, 아래 각목의 계약에는 부가하지 아니한다.

(가) 제3보험

(나) 어린이를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로 하는 보험

(다) 단체보험

(2) 이 특약의 판매이전 체결된 주계약에 대하여도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은 주계약에 따른다.